

집합투자기구 정정

- 대상투자신탁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대상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변경내용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변경후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연금저축 클래스 신설 : 종류C-P, 종류C-Pe(연금저축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온라인 판매전용), 종류S-P(펀드슈퍼마켓 연금저축계좌) 신설,
 3.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변경후 → 종류C-P2, 종류C-P2e) 및 판매보수 인하
 4. 환매수수료 삭제
 5. 책임/부책임운용인력 변경(정두선/이강국 → 김경운/이동근)
- 효력발생일 : 2018.06.11(월)
- 변경대비표(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I.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전략 보완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삭제>
보수 *주석사항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신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AG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AG,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2e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투자전략 보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투자전략 보완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

			<p>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p> <p>-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p> <p>-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p> <p>-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p> <p>-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p>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1)책임운용인력 : 정두선 (2)부책임운용인력 : 이강국	(1)책임운용인력 : 김경윤 (2)부책임운용인력 : 이동근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 2018.06.03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	<p>■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 변경대비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요약정보> 1.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전략 보완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삭제>
보수 *주석사항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신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AG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f, 종류C-i, 종류C-w, 종류AG,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2e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투자전략 보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 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 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투자전략 보완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 -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1)책임운용인력 : 정두선 (2)부책임운용인력 : 이강국	(1)책임운용인력 : 김경운 (2)부책임운용인력 : 이동근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 2018.06.03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에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세제 관련 사항 추가		<p>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신설>	<p><종류S-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2</p> <p><종류C-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3</p> <p><종류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4</p>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종류C-P2, 종류C-P2e)	<p><종류C-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0167</p> <p><종류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Z882</p>	<p><종류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0167</p> <p><종류C-P2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Z882</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신설>	<p><종류S-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2</p> <p><종류C-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3</p> <p><종류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A924</p>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	<p><종류C-p>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0167</p> <p><종류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p>	<p><종류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0167</p> <p><종류C-P2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p>

		BZ882	BZ88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1)책임운용인력 : 정두선 (2)부책임운용인력 : 이강국	(1)책임운용인력 : 김경운 (2)부책임운용인력 : 이동근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신설>	<종류S-P> - 펀드코드 : CA922 - 가입자격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종류C-P> - 펀드코드 : C A923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Pe> - 펀드코드 : CA924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전용이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	<종류C-p> - 펀드코드 : A0167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C-pe> - 펀드코드 : BZ882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C-P2> - 펀드코드 : A0167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C-P2e> - 펀드코드 : BZ882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투자전략 보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u>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이에 따른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u>	투자하고 <u>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u>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보완	<p>(1) 기본운용전략</p> <p>■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p> <p>(2) 세부운용전략</p> <p>■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p> <p>○투자대상 종목의 매출 및 수익성장 등 감안하여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p> <p>○<u>포트폴리오 구성시 고려사항</u></p> <p>*<u>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수요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혜 여부</u></p> <p>*<u>신규사업(현대중공업, 풍력산업, KCC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등)의 경쟁력</u></p> <p>*<u>국내외 생산능력 확충 및 신제품 출시</u></p> <p>*<u>수요 및 경기 진작정책 등 정책적 효과(자동차, 건설 등)</u></p> <p>■ 초과수익 추구 전략</p> <p>○<u>산업간 혹은 기업간 긴밀한 사업연관성과 이를 통한 수익의 연관효과를 활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철강, 화학, 전자재 등 소재산업 및 운송산업 등)</u></p> <p>○<u>수요 및 경기 진작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동/후행 내수관련 종목군(금융, 유통, 건설 등)의 국면별 활용이 반영된 포트폴리오 조정</u></p> <p>■ 위험 관리 전략</p> <p>○<u>주가지수선물 매도헤지 또는 주식 투자비중 조절로 시장위험 관리</u></p> <p>○<u>전후방 산업간 연관성이 높은 현대그룹플러스 관련주의 특성상 구조적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산업의 비중 축소</u></p>	<p>(1) 기본운용전략</p> <p>■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u>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u></p> <p>(2) 세부운용전략</p> <p>■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p> <p>○투자대상 종목의 매출 및 수익성장 등 감안하여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p> <p>○<u>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u></p> <p>○<u>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u></p> <p>○<u>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u></p> <p>○<u>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u></p> <p>■ 초과수익 추구 전략</p> <p>○<u>산업내 핵심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및 업종 대비 초과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 발굴 투자</u></p> <p>○<u>현대그룹플러스 협력업체 등으로서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발굴 투자</u></p> <p>■ 위험 관리 전략</p> <p>○<u>필요시 주가지수선물 매도헤지 또는 주식 투자비중 조절로 시장위험 관리</u></p> <p>○<u>현대그룹플러스 관련주의 특성상 구조적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산업의 비중 축소</u></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신설>	<종류S-P> - 가입자격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p>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p>			<p>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u><종류C-P></u>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u><종류C-Pe></u>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전용이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p>	<p><u><종류C-p></u>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u><종류C-pe></u>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p>	<p><u><종류C-P2></u>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u><종류C-P2e></u>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p>
<p>나. 환매 (4) 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u>30일 미만 : 이익금의 70%</u> <u>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환매수수료 삭제</p>	<p><u>30일 미만 : 이익금의 70%</u> <u>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u></p>	<p><u><삭제></u></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p>	<p>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p>	<p><u><신설></u></p>	<p><u><종류S-P></u>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환매수수료 : 없음 <u><종류C-P></u>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환매수수료 : 없음 <u><종류C-P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 - 환매수수료 : 없음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	<p><종류C-p>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p> <p><종류C-pe>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p>	<p><종류C-P2>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p> <p><종류C-P2e> -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p>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S-P, 종류C-P, 종류C-Pe 신설	<신설>	<p><종류(클래스) S-P>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24(%)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p><종류(클래스) C-P>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80(%)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p><종류(클래스) C-Pe>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40(%)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 및 판매보수율 인하	<p><종류(클래스) C-p>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80(%)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p><종류(클래스) C-pe>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40(%)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p><종류(클래스) C-P2>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76(%)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p><종류(클래스) C-P2e>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7 (%) - 판매회사보수 : 0.38(%) - 신탁회사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2(%)</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종류C-P, 종류C-Pe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	<신설>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p>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p> <p>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현황</p>	<p>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p> <p>작성기준일: 2018.06.03</p> <p>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현황</p>

			작성기준일:2018.03.13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주 변경	가. 회사개요 - <u>주요주주 현황 : KB증권</u>	가. 회사개요 - <u>주요주주 현황 : 키스톤금융산업홀딩스유한회사</u>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u>2016.12.31</u> <u>2015.12.31</u>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u>2017.12.31</u> <u>2016.12.31</u>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u>작성기준일:2018.06.03</u>

□ 변경대비표(집합투자계약)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u>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u>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라 한다.</p> <p>② <생략></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 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생략></p> <p><u>12. 종류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u></p> <p>13. <생략></p> <p>14. <생략></p> <p><u>15. 종류C-pe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 판매 전용 수익증권</u></p> <p><u>16. <신설></u></p> <p><u>17. <신설></u></p> <p><u>18. <신설></u></p>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종류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u></p> <p>13.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u>15. 종류C-P2e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 판매 전용 수익증권</u></p> <p><u>16. 종류S-P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p> <p><u>17. 종류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u>18. 종류C-Pe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p>

	<p>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11. <생략></p> <p>12. <u>종류C-p 수익증권</u></p> <p>13. <생략></p> <p>14. <생략></p> <p>15. <u>종류C-pe 수익증권</u></p> <p>16. <신설></p> <p>17. <신설></p> <p>18. <신설></p>	<p>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14. <생략></p> <p>12. <u>종류C-P2 수익증권</u></p> <p>13.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15. <u>종류C-P2e 수익증권</u></p> <p>16. <u>종류S-P 수익증권</u></p> <p>17. <u>종류C-P 수익증권</u></p> <p>18. <u>종류C-Pe 수익증권</u></p>
제39조(보수)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u>(종류C-p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u>(종류C-pe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u>(종류C-P2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6</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u>(종류C-P2e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8</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u>(종류S-P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u>(종류C-P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u>(종류C-Pe 수익증권)</u></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7</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p>	<p><삭제></p>

	<p>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A, A-e, C, C-e, C-i, C-f, C-w, S, AG 수익증권 가.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p> <p>2. 종류C-p, C-pe 수익증권 가. 90일미만 : 이익금의 30%</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기 타 :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